



경쟁저널

Journal of Competition

2013 September

특집 계약자유원칙과 거래상 지위 남용

신영수 | 판례를 통해 본 거래상 지위 남용 규제의 역할과 한계
김정훈 | 일본 독점금지법상 우월적 지위 남용 규제
최영홍 | 개정 가맹사업법 소고

공정거래 제도·정책 해설

신영호 | 금년도 카르텔 정책·집행방향 및 향후 대응

대법원 판결 요지

김정중 | 대법원 공정거래사건 판결 요지 : 2013년 7월, 8월

공정거래 사건 요약

(주)신촌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외

법경제 강화

남재현 |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방법

국내외 심·판결 평석

한승혁 | 정보교환행위와 공동행위의 관계

해외 경쟁법 집행동향

미국과 EU의 경쟁법·제도 및 사건 처리동향

글로벌 경쟁 리포트

김용상 | 미국 경쟁법의 3배 손해배상 제도
이병건 | EU의 동의를결 제도 운용동향
김희은 | 유럽의 제약산업 관련 경쟁법 집행동향

오피니언

이재형 | 경제민주화와 일감 몰아주기

미국 경쟁법의 3배 손해배상 제도

Arnold & Porter LLP, Counsel 변호사 | 김용상

I. 시작하며

최근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관심이 부쩍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오래 전부터 있어온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일반적 논의와 더불어, 최근에 하도급거래 위반행위에 있어서는 손해의 3배까지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됨으로써 그 논의가 더욱 활발해진 듯 하다.

미국의 경쟁법에서는, 1890년 처음 셔먼법이 제정될 때부터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3배소(treble damages action) 규정이 존재하였다.¹⁾ 이 조항은 추후 클레이튼법 제4조²⁾로 대체되었고, 그후 계속해서 미국 경쟁법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3배소 제도의 존속 여부에 대한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지난 2007년 반독점법 현대화 추진위원회(Antitrust Modernization Commission)가 발표한 보고서(Report and Recommendations) 준비과정 중에 개최된 공청회에서, 3배소 규정이 그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었다.³⁾

본고에서는 미국 경쟁법 하의 3배소 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슈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미국 경쟁법 위반행위를 근거로 한 민사소송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다른 쟁점 사안들도 다루어, 한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논의과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1) "Any person who shall be injured in his business or property by any other person or corporation by reason of anything forbidden or declared to be unlawful by this act; may sue therefor in any circuit court of the United States in the district in which the defendant resides or is found, without respect to the amount in controversy, and shall recover three fold the damages by him sustained, and the costs of suit, including a reasonable attorney's fee." Sec. 7 of the original Sherman Act (1890) (emphasis added). Available at <http://www.ourdocuments.gov/doc.php?doc=51&page=transcript>.

2)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any person who shall be injured in his business or property by reason of anything forbidden in the antitrust laws may sue therefor in any district court of the United States in the district in which the defendant resides or is found or has an agent, without respect to the amount in controversy, and shall recover threefold the damages by him sustained, and the cost of suit, including a reasonable attorney's fee." 15 USC §15(a), available at <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15/15>.

3) Before the Antitrust Modernization Commission, Private Damage Remedies: Treble Damages, Fee Shifting, Prejudgment Interest, Abbott B. Lipsky, Jr., available at http://govinfo.library.unt.edu/amc/commission_hearings/pdf/Lipsky.pdf.

II. 미국 경쟁법의 3배 손해배상 제도

1. 제도 및 실행

미국 경쟁법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는, 클레이튼 법 제4조에 따라 자동으로 자신이 입은 피해의 3배를 배상받게 된다. 즉, 원고가 경쟁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액이 결정되면 그에 따른 배상액이 자동적으로 3배로 늘어나게 되며, 배심원이나 판사의 재량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지 않는다.⁴⁾ 3배 손해배상 제도의 주요 목적은 ① 경쟁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억제(deterrence) ② 경쟁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punishment) ③ 경쟁법 위반행위로 얻게 된 이익의 환수(disgorgement) ④ 경쟁법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온전한 배상(full compensation to victims) ⑤ 경쟁법 사적 집행(private enforcement)의 활성화이다.⁵⁾

(1) 예외 규정들

의회에서는 법률을 통하여 3배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의 경우를 규정하였는데, 가장 최근에 제정된 예외규정은 반독점법 형사처벌 확대 및 개선에 관한 법률(ACPERA; Antitrust Criminal Penalty Enhancement and Reform Act)이다.⁶⁾ 2004년 한시적인 법으로 제정되었던 ACPERA는, 기업들의 자진신고(leniency application)를 장려하는 효과가 인정되어, 2010년 의회에 의하여 2020년까지 유효하도록 10년간 그 기간이 연장되었다. ACPERA는 범명(法名) 자체에서 볼 수 있듯이 형사법적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자진신고 등의 형사법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민사소송상의 개선책도 담고 있다.⁷⁾ 그 내용인즉, 미국 법무부에 자진신고를 한 피고가 민사소송 과정에서 원고 측에 충분한 협조를 제공하였을 때는 3배 손해배상과 연대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에서 면제되고, 자기 판매액에 근거한 실제 피해액(single damages based on its own sales)에 대한 배상책임만을 지게 된다.⁸⁾

4) Antitrust Law Developments (7th ed.), (Jonathan I. Gleklen et al. eds., ABA Section of Antitrust Law) (2012), p. 776.

5) Id.; Antitrust Modernization Commission, Report and Recommendations (2007), p. 246.

6) Pub. L. No. 108-237, 118 Stat. 665 (codified as 15 U.S.C. §1); 이 외에도 The 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and Production Act 하에서 조인트 벤처 기업(Joint Ventures)과 표준설정기관들(Standards Development Organizations), 그리고 The Export Trading Company Act에서 수출무역회사(Export trading companies)가 일정 절차를 밟고 요건을 갖추게 되면,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3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고 실제 피해액(single damages)에 대한 배상책임만 지게 된다.

7) ACPERA의 형사법적 내용에 대해서는 필자의 <경쟁저널> 2012년 11월호의 글("미국 경쟁법의 주요 이슈 : 형사조사")을 참조하라.

8) Antitrust Criminal Penalty Enhancement and Reform Act of 2004, Pub. L. No. 108-237, §213(a), 118 Stat. 665, 666 (codified as amended at 15 U.S.C. §1).

(2) 소송적격 및 피해전가⁹⁾

3배 손해배상소송은 연방법 하에서는 직접구매자(direct purchaser)에 의해서만 제기될 수 있다. 여기서 직접구매자란 경쟁법 위반자로부터 직접 경쟁법 위반행위로 인한 영향을 받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한 자를 말한다. 즉, 가격담합의 경우 담합에 가담한 회사로부터 직접 물건을 구매한 사람이 직접구매자이며, 그 직접구매자로부터 추후에 물건을 구매한 이는 간접구매자(indirect purchaser)가 된다. 이 두 개념은 3배소 소송의 소송적격과 피해전가 문제를 논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Hanover Shoe¹⁰⁾와 Illinois Brick¹¹⁾ 판결을 통하여 발전되었다.

Hanover Shoe 사건은, 신발 제조업체인 Hanover Shoe가 신발제조기계를 판매하는 United Shoe Machinery를 상대로 경쟁법 위반 민사 3배소(treble damages action)를 제기한 것이다. Hanover Shoe는 United Shoe Machinery가 신발제조기계를 판매·임대하는데 있어서 경쟁법 위반행위를 통하여 신발제조기계 시장의 독점화(monopolization)를 꾀하였고, 그로 인하여 Hanover Shoe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United Shoe Machinery는 반론 중 하나로, 불법적 독점화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신발제조업체인 Hanover Shoe는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신발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전가(pass-on)하였기 때문에 소송을 통하여 배상받을 피해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에 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Hanover Shoe가 입은 피해액(신발제조기계에 대하여 더 지출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였다고 할지라도, United Shoe Machinery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Hanover Shoe의 이윤이 더 많았을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Hanover Shoe가 제기한 피해전가 주장에 근거한 방어(Pass-on defense)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처럼 Hanover Shoe 판결을 통하여, 미국 연방법원의 경쟁법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방어적 피해전가(Defensive Pass-on)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었다.

Illinois Brick 사건에서는, Hanover Shoe의 방어적 피해전가 주장을 원고가 공격적으로 제기(Offensive Use of Pass-on Argument)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다. 일리노이 주정부와 700여 개의 지방정부기관들은 콘크리트 블록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가격담합에 근거한 3배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의 근거는 제조업체들의 콘크리트 블록에 대한 가격담합으로 인하여, 일리노이 주와 지방정부기관들이 콘크리트 석조건

9) 소송적격 및 피해전가에 관한 내용은 필자의 2013년 1월호 <경쟁저널>의 글 (“미국 경쟁법의 주요 이슈: 민사소송”)에서 발췌하여 인용하였다.

10) Hanover Shoe, Inc. v. United Show Machinery Corp., 392 U.S. 481 (1968).

11) Illinois Brick Co. v. Illinois, 431 U.S. 720 (1977).

물을 구입하는데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었다. 콘크리트 블록은 제조업체가 제작하여 석조공사 계약자들(직접구매자)에게 판매하였고, 이는 다시 하청업체에 판매되었다. 소송을 제기한 일리노이 주와 지방정부기관들(간접구매자)은 건물을 구입할 때 완제품(건물)의 일부로 자신들에게 콘크리트 블록이 포함(incorporate)되어 넘겨졌고, 이 때 담합으로 인하여 인상된 콘크리트 블록의 불법적 가격상승분이 원고들에게로 전가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대법원은 Hanover Shoe의 방어적 피해전가 주장이 이유가 없듯 일리노이 주의 공격적 피해전가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 이후 간접구매자(indirect purchaser)는 미국 연방법원에서 경쟁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standing)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간접구매자는 소위 ‘일리노이 브릭 폐지법(Illinois Brick repealer statute)’을 제정한 주법(州法)¹²⁾에 근거해야만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¹³⁾ 미국 경쟁법에서는 이를 ‘Illinois Brick의 간접구매자 손해배상소송 금지판결(Illinois Brick indirect purchaser bar)’이라고 부른다.

2. 평가와 논의

2002년 미국 의회는 반독점법 현대화 추진위원회법(Antitrust Modernization Commission Act)을 제정하여, 미국의 경쟁법이 현대화될 필요가 있는지, 그렇다면 어떠한 이슈들이 연구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연구·검토를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위원회는 12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는데 대통령, 상원의장, 하원의장이 각각 4명씩 임명하였다. 위원회는 2007년에 보고서(Report and Recommendation)를 제출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는데, 위원회가 다루었던 이슈 중 한 가지가 바로 3배소 제도였다. 비록 위원회의 추천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반독점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망라한 보고서를 통하여 미국 내의 3배소 제도에 대한 여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위원회는 3배소 제도에 대한 여론 청취 후에 3배소 제도 자체는 그대로 존속시키되,

12) Illinois Brick 판결 폐지 주(州) 중 하나로 캘리포니아 주를 들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쟁법인 카트라이트법(Cartwright Statute)의 Illinois Brick 폐지조항과 관련한 판례에 대해서는 <경쟁저널> 제163호의 글, “미국 경쟁법의 구조와 집행” 80쪽을 참조하라.

13) 간접구매자라고 할지라도 연방법원에서 가격담합으로 인한 계속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금지처분소송(Injunctive relief suit)은 제기할 수 있다. Illinois Brick의 간접구매자 손해배상소송 금지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간접구매자들도 연방법원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고 있다. 이것은 연방법원의 보충적 관할권(Supplemental jurisdiction)을 이용하여 연방법 하의 금지처분소송을 제기하고, 주법 하에서 주장 가능한 손해배상소송을 연방법원에서 동시에 제기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3배소 제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연대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과 반독점법 민사소송에서 분담청구권(right of contribution)의 부재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미국 내에서 3배소 소송과 관련해서는, 현재 제도를 그대로 존속시키자는 의견과 가격담합 등의 중대한 경쟁법 위법행위에만 제한하여 적용시키자는 의견, 그리고 3배 손해배상이라고 규정짓지 말고 판사의 재량에 따라 사안별로 실제 손해액 대비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¹⁴⁾ 위원회는 3배소 제도의 5가지 목적¹⁵⁾에 비추어 제시된 안들을 살펴보았을 때,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가격담합 등의 중대한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3배소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은, 담합 등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적발(detect)하기 어렵기 때문에 3배소 등을 통하여 억제하고 적발되었을 때는 엄격히 처벌해야 하지만, 기업결합이나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설립 등 그 자체가 명확히 드러나는 행동에 대해서는 실손해액 배상(single damages) 등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이 의견이 일부 타당하여 보임을 인정하면서도, 가격담합 등이 일견 합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조인트 벤처 등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거부하였다.¹⁶⁾ 또한 경쟁법 위반행위 전반에 걸친 3배소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지나친 억제(overdeterrence)를 통하여 경쟁법이 추구하는 경쟁촉진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원회는 법규정을 통하여 어떠한 것이 3배소에 해당할 만한 당연위법(per se illegal)행동이고, 어떠한 것이 합리적 원칙(rule of reason)에 따라 분석되어야 할 행동인지 구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3배소 규정의 적용을 제한할 경우에 경쟁법 위반행위를 억제하려는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 의견도 거부하였다.¹⁷⁾

경쟁법 위반 억제의 측면에서 순전히 경제적 이익만을 따지자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3배소 규정의 존재가 큰 역할을 담당함을 부인할 수 없다. 3배소 제도가 없다고 가정하고 경쟁법 위반행위의 절반 수준만 적발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순전히 경제적 측면에서는 담합 등의 경쟁법 위반행위를 통하여 회사가 손해보다는 이익을 볼 수 있다는 판

14) Antitrust Modernization Commission, Report and Recommendations (2007), pp. 245-247; see Treble Damages and Antitrust Deterrence: A Dialogue, Prof. Herbert J. Hovenkamp and Prof. Louis B. Schwartz, 18 Antitrust L. & Econ. Rev. 67 (1986). 1986년 미국의 경쟁법 권위자인 호벤캠프 교수는 3배소 소송을 일부 경우로 제한하자는 주장을 한 반면, 그의 동료인 슈와츠 교수는 지금 그대로 존속시키자고 주장하였다.

15) Report and Recommendations, at p. 246.

16) Id.

17) Id.

단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담합이 대부분 장기간 적발되지 않은 상태로 존속하며, 예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소송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제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3배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즉 1/3의 적발확률만 있어도 경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이득이 사라지고 비경제적인 다른 위험요소도 존재하는 것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경쟁법 위반행위를 할 인센티브(incentive)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오랜 기간 적발되지 않았던 담합행위도 현재 가치가 아닌 오래 전의 가치로 손해액을 계산하여도, 3배소 제도로 인하여 원고가 실제 피해액보다 적게 회복하지는 않는다.¹⁸⁾ 결국, 위원회는 3배소 제도는 그대로 존속시키되, 기업들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는 연대책임제도와 분담청구권의 부재를 해결하는 방안을 추천하였다.

3. 연관 이슈들

(1) 연대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

미국에서 가격담합(price-fixing)이나 입찰담합(bid rigging) 등 여러 행위자가 공모하여 경쟁법을 위반한 경우, 이 행위자들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한다. 연대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이란 한 피고에게 원고가 다양한 피고들에게서 입은 손해액 전부의 배상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즉, 여러 기업이 공모하여 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하였다가 그 중 다수의 기업이 파산하였다고 할지라도, 남아 있는 한 두 개 기업에게 가격담합으로 인한 피해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제도의 취지 역시 경쟁법 위반행위가 대부분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방지하기 위한 억제(deterrence)에 주(主)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대책임이 기업들을 큰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경쟁법에서는 담합 가담자들 중 일부가 담합에 대한 전체 그룹의 책임을 떠안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담합 가담자들에게 책임을 분담하도록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분담청구권(Right of Contribution)

경쟁법 위반행위자들에 대한 분담청구권 허용 불가능, 바로 경쟁법 위반 억제라는 정책 목표로 합리화되고 있다. 여러 기업이 담합하여 피해를 발생시켰지만 한 기업이 모든

18) See Robert H. Lande, Are Antitrust "Treble" Damages Really Single Damages?, 54 Ohio St. L.J. 115 (1993).

피해액을 배상해주었을 경우, 그 기업은 다른 기업들을 상대로 배상액 분담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미국 경쟁법 상으로 확립된 법칙(settled law)이다. 다만, 일부 피고가 3배소 소송과정에서 이미 합의(settlement)로 소송을 마무리 지었을 경우, 원고 측에서 받은 합의금은 남은 피고들이 부담해야 하는 3배 손해배상액수에서 제외되게 된다. 이 경우도 남은 피고들은 원고의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부분 실손해액을 근거로 계산되는 합의금 액수만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고 재판까지 수행한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액수는 훨씬 커지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위원회는, 현존하는 연대책임제도와 분담청구권의 부재는 원고 측에 지나치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3배소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본안의 실체(merits)와는 상관이 없이, 피고는 연대책임 등으로 인한 지나친 위험에 노출됨으로써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지을 수 밖에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피고가 합의를 한 경우 그 피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만큼의 분량을 원고의 소송청구액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합의하지 않은 피고들 사이에는 분담청구권을 인정하도록 미국의 경쟁법을 개정할 것을 추천하였다.¹⁹⁾ 이러한 추천사항은 6년이 넘어선 지금까지도 아직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의 반독점법 분야 변호사들은 많은 부분 이러한 위원회의 추천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III. 시사점

이미 백수십 년째 3배소 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는 미국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또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안도 추천되어 있다. 필자가 보는 미국의 현행 3배소 제도는 억제 최우선주의 정책목표가 법률에 반영되어 있기에 일단 소송의 대상이 되고 나면 피고가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한국에서도 징

19) Report and Recommendations, p. 253. 위원회가 추천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A, B, C라는 3개 회사가 가격담합을 한 것에 대하여 원고측에서 1억 달러의 피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A는 8,000만 달러에 합의하고 B와 C는 재판을 통하여 배상을 하도록 판결이 난 상황을 가정해보자. 또한 A의 시장점유율은 50%, B의 시장점유율은 30%, C의 시장점유율은 20%로 가정한다. 3배소 제도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한 1억 달러의 손해액의 3배 즉, 3억 달러를 배상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에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A는 8,000만 달러에 합의하였기 때문에 B와 C는 3억 달러 중에서 8,000만 달러를 제외한 2억 2,000만 달러의 배상책임을 연대책임으로 진다. 즉, 원고 측은 B와 C 두 회사 중에서 어느 한쪽에서라도 2억 2,000만 달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전적으로 원고 측에 속한다. 그리고 B와 C는 2억 2,000만 달러에 대하여 타회사에 단 한 푼의 분담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위원회가 추천한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3억 달러의 총 배상액 중에서 A의 시장점유율에 해당하는 50%만큼의 액수, 즉 1억 5,000만 달러는 8,000만 달러의 합의금으로 종결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남아있는 1억 5,000만 달러는 연대책임 하에 원고가 결정하는 대로 B와 C 어느 한쪽에서 배상받을 수 있지만, 추후 B와 C는 상대방의 시장점유율에 상응하는 만큼의 액수를 - B는 C에 대하여 20% 즉 6,000만 달러, C는 B에 대하여 30% 즉, 9,000만 달러 - 분담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별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도입하는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의도치 않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단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제도들을 충분히 연구하고 이해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게 선택적이고 점진적으로 도입할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의의 시계추가 지나치게 원고나 피고에게 유리하게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제도의 도입뿐만 아니라 그 실행과정에 있어서도 끊임없는 조율이 필요할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급진적이고 전면적인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 증가와 지나친 소송의 확대는 지양하되, 한국의 경쟁법 의식수준을 세계화하여 기업들이 세계무대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일은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다. 

